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94 발의연월일: 2025. 5. 23.

발 의 자:전용기·이건태·용혜인

주철현 • 박정현 • 허성무

박지원 · 황운하 · 이광희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인상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 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 조제2항). 법률 제 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를 감안하여"를 "봉급을 적용하고 수당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수당을 준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년 미만"을 "6년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년 이상 23년 미만"을 "6년 이상 13년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3년 이상 30년 미만"을 "13년 이상 21년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년 이상"을 "21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 략)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②
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u>봉급을</u>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당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
	는 경찰공무원의 수당을 준용하
	<u></u>
1. 재직기간 <u>15년 미만</u> : 순경	1 <u>6년 미만</u>
2. 재직기간 <u>15년 이상 23년 미</u>	2 <u>6년 이상 13년 미</u>
<u>만</u> : 경장	<u>만</u>
3. 재직기간 <u>23년 이상 30년 미</u>	3 <u>13년 이상 21년 미</u>
<u>만</u> : 경사	<u>만</u>
4. 재직기간 <u>30년 이상</u> : 경위	4 <u>21년 이상</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